

ESG 위원회 운영규정

주식회사 팜스코

제정 2022년 02월 14일

ESG 위원회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팜스코(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관 제37조의 2(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 13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근거하여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여진 것』이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회사가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 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환경·사회·지배 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 경영 전략을 수립 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는 회사의 ESG 경영 전략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검토하며, ESG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자문한다.
3. 위원회는 심의 결과와 활동 내역을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 대한 보고는 이 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청 등)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 등에게 위원회 출석, 관련 사항의 보고, 의견 진술,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법률·회계 전문가 등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2장 구 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의장을 포함한 과반수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1. 위원회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1. 위원회는 회의를 대표하고 주재할 위원장을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2. 위원장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결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정한다.

제8조 (이사회 및 대표이사와의 관계)

1.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ESG 경영 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와 의견 등을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나,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9조 (간사)

1.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사의 준법지원실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보임한다.
2.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의 전반을 담당한다.

제 3장 회 의

제10조 (종류)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연간 4회 개최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소집권자)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임시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 전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집절차)

1. 본 규정 제11조 각 항에 따른 위원회 소집권자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2. 위원 전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위원회를 열 수 있다.

제13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규정 제11조 각 항에 따른 위원회 소집권자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 장소에 출석하는 대신 음성·화상 등을 송·수신하는 적절한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ESG 경영전략 수립과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관련 사항

2. ESG 보고서 및 공시 관련 사항

3. 그 외 ESG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 (의사록 작성 및 자료 보존)

1.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제1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심의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6조 (경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4장 보 칙

제17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4일 부터 시행한다.